

## 경운대학교 학술연구기금관리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에 출연하는 학술연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정하여 기금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관장)** 기금의 관리업무는 산학연구처에서 총괄한다.

**제3조(기금의 조성)** 기금이라 함은 재단 출연금, 외부기관 기부금, 연구 간접경비, 기타 수입금 등으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하여 본교에 무상으로 후원된 재산을 말한다.

**제4조(회계처리)**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교의 세입과 세출예산에 관한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예치하여 사무처 총무과에서 관리한다.

③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은 제4조 2항의 계좌에 적립한다.

**제5조(영수증의 발급 및 사의(謝意)의 표시)** 기금의 기부 시에는 총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의(謝意)를 표할 수 있다.

**제6조(사용용도)** 기금은 일정기간 적립하며, 기금적립에 의하여 발행한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금은 산학연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교내 학술연구비
2. 연구시설 유지 및 보수비
3. 연구 활동 인력의 인건비
4.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비
5. 기타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
**제7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